

##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- ▶ 본 조례 개정안 1997년 4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■ 提案事由

-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
- 법률에 맞추어 기금조성재원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.

### ■ 主要骨子

- 조례 제7조(장학금의조성및관리) 제1항중 “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”을 삭제 개정

### ■ 關聯根據

-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(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)

### ■ 檢討意見

- 본 조례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('95. 12. 30 법률 제5126호 공포)이 '96. 7. 1 시행되어
- 자치단체에서 각종 기금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기금조성재원을 “주민성금”, “기부금”, “기탁금”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(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)의 규정에 위반되어
- 조례 제7조 제1항의 내용중 “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”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.
- 위와같이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본조례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